

KEPCO 공급자 행동규범

- KEPCO Code of Conduct for Suppliers -



KEPCO 공급자 행동규범

- KEPCO Code of Conduct for Suppliers -

제정 2012. 07

개정 2023. 10

전 문

KEPCO는 에너지전환 선도, 청정에너지 확대 및 디지털변환을 통하여 "KEPCO - A Smart Energy Creator"라는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EPCO가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규범은 KEPCO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KEPCO와 공급자 모두에게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KEPCO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규범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KEPCO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규범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인류의 행복한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일반 요건

KEPCO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KEPCO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규범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세부 요건

I. 윤리적 기준

- 1.1 **(청렴성)** 공급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당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1.2 **(반경쟁적 행위)**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 1.3 **(청탁)**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1.4 **(교육·신고)**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KEPCO 부조리신고센터(www.kepcoco.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5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자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급자의 노동, 안전보건, 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 조작 및 허위진술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1.6 **(지적재산권 보호)** 공급자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KEPCO뿐 아니라 하위 공급자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1.7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8 **(개인정보 보호)** 공급자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II. 사회적 기준

- 2.1 **(법규준수)**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국내 및 국제노동조약 ILO conventions 등)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2.2 **(강제근로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강제근로, 비자발적 노동,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발행한 공식 서류(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 등)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공급자 또는 인력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 2.3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2.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2.5 **(아동노동 금지)**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 2.6 **(차별금지)** 공급자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 2.7 **(결사의 자유)** 공급자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 2.8 **(산업안전)** 공급자는 보건 및 안전위험 요소(감전, 화재, 차량, 추락 위험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 적절한 설계, 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및 안전작업절차 구축을 통해 파악, 평가 및 통제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산업 보건 및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 요소를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수유기 여성 근로자는 유해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위해 요소를 제거 또는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9 **(산업재해 및 질병예방)**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고 장려, 상해 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조치 이행,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의 복귀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2.10 (안전보건 교육) 공급자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현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작업 시작 전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보건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공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III. 환경적 기준

- 3.1 (법규준수)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3.2 (환경 인허가 취득) 공급자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신 법규 사항을 반영하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3.3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공급자는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오염원 제어 설비 추가 등을 통해 최소화 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물, 화석 연료, 광물 및 원시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사용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유지 관리 강화, 설비 공정의 변경, 대체 자재, 재사용, 보존, 자재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 3.3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공급자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전력과 연료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4 (유해물질 관리) 공급자는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3.5 (폐기물 관리) 공급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6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물질과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고, 배출현황은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대기 배출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3.7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공급자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8 (지속가능한 구매정책)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